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재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138 |
|----------|-----|

2022년 9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시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3. 상정일자 :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9월 22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상한 복지정책실장)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공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기본법」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그 ‘희생·공헌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제도 또는 절차 안내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음

- 아울러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은 하였으나, 등급의 판정으로 ‘희생·공헌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청년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보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임
- 이러한 보훈정책의 미흡한 부분이나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청년 제대군인들의 공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며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 시장은 군복무 중 부상 당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 유공자 등의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 지원 노력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 시장은 군복무 중 부상 당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 유공자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다.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8조)

-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상담센터’의 운영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라. 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정보제공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수집·관리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22. 6. 2. ~ 6. 22.) 결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제정안의 개요

- 본 제정안은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은 하였으나, 등급의 판정으로 ‘희생·공헌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보훈 사각지대 청년 제대군인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것임.
- 현재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주로 간부 제대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음.¹⁾
- 이에 서울시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청년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일상 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제정안은 1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 | |
|---------------|------------------------------|
| 제1조(목적) | 제6조(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
| 제2조(정의) | 제7조(비용의 지원) |
| 제3조(시장의 책무) | 제8조(대행·위탁) |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 제9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
| 제5조(지원대상) | 제10조(시행규칙) |
| | 부 칙 |

1) 남광규. (2020).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논총, 19(3), 73-96.

가. 총칙 규정 (안 제1조~제3조)

- 제정안 제1조는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전상·공상 청년 유공자,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 등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지원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는 주요 용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제2조의 정의에서는 관련 법과 조례에서 주요 정의를 차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의 경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제정안 제2조제1항3호에서 정의하는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의 정의를 일부 차용하면서, 「제대군인법」에서는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하는 데 비해, 본 제정안에서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한 사람을 추가한 것이 차이로 하겠음.

- 「병역법」²⁾에서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에서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현행 「제대군인법」에 따르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하며,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하고 있음.

2) 「병역법」 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 1. 19.>

3) 예술·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2016. 1. 19.>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5. 29.>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현행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제대군인법」에 의해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취·창업 지원, 구직활동 지원, 직업교육훈련 등이 주된 내용임.

<표> 보훈관서 제대군인 지원제도

| 지원제도 | 주요내용 | |
|------|-----------------|--|
| 취업지원 | 취업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생활수준 조사결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 이하인 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시 자녀1인 대리 취업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 · 지원신청 : 취업희망지역 관할 보훈관서에 취업희망신청서 제출 |
| |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군복무자 : 3세 연장, 1년 이상 2년 미만 군복무자 : 2세 연장 1년 미만 군복무자 : 1세 연장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및 군복무 경력의 호봉·임금만영은 보훈관서 등록 불필요 · 군복무 경력을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호봉이나 임금결정 시 반영 * 취업지원 실시기관 재량 |
| 교육지원 | 제대군인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내에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사람 · 지원내용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50%까지 보조(입학금, 수업료) · 지원절차 : 보훈관서에서 발행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교육기관에 제출 · 지원제외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 지원제도 | 주요내용 | |
|-------------|---|--|
| | 제대군인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로 교육지원신청을 통한 생활수준 조사결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교육지원신청서 제출 |
| 국립묘지안장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묘지별 안장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 20년 이상 군복무자 (배우자 합장 가능) - 국립 영천·임실·산청·괴산 호국원 : 10년 이상 군복무자 (배우자 합장 가능) · 안장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에서 신청 - 병적증명서 해당 국립묘지로 팩스 송부 · 신청서류 : 병적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 |
| 주택지원 및 대부지원 | 주택우선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 지원내용 : 공공 및 민영 아파트 분양·임대 공급물량 중 제대군인 특별공급분 (복무기간 등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지원신청 : 매년 초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
| | 대부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제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종류 : 주택 구입(신축)·임차, 아파트 분양,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 학자금 대부한도액 : 300~8,000만원 - 연이율 : 상환기관 1.9~2.9%, 대부 종류별로 3~20년 - 지원 신청 : 전국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 (신용관리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
| 의료지원 | 보훈병원 감면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기간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 지원내용 : 보훈병원(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이용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 | 경상이자 국비 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전·공상 제대군인으로서 상이등급 신체검사 시 등외 판정자 · 지원내용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원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 |
| | 군병원 무료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원내용 : 외래 및 응급진료 (요양급여는 무료, 비급여는 50% 감면) |

| 지원제도 | 주요내용 |
|-----------|---|
| 공공시설 감면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공공시설별 감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기념관 : 무료 -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능원 : 50% 감면 (단, 특별관람료는 감면대상 아님) - 국립민속박물관 : 50% 감면 |

(출처 : 2022년 제대군인 지원안내서)

- 이처럼 대부분의 제대군인 지원이 5년 이상 근무한 중·장기 복무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의무복무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취업취약계층(의무복무자) 취업지원 사업³⁾ 등 일부 사업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22년 8월말 기준 국가보훈처의 통계에 따르면, 보훈대상자⁴⁾ 가운데 본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만 39세 미만의 보훈대상자는 32,900명으로 전체 보훈대상자 573,950명 중 약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에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군인이 7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무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경험한 군인들은 입증 책임을 본인이 증명해야 하고 군에서도 안내를 받지 못해 유공자 신청을 놓친 경우가 기사화되기도 하였음.⁵⁾

3)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등급기준 외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대상

4) 유족 제외, 제대군인 포함

5) “軍사고에 미래 꺾인 ‘바다청년’ ...피해자 배려는 없었다”. KBS 뉴스, 2021년 2월 16일 수정. 2022년 9월 13일 접속,

-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서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장애 제대군인’의 유공자 신청과정 지원을 포함해 보훈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대상 (안 제4조~5조)

-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조례에 대한 지원대상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 규정하는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음.

1.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이와 관련해 집행기관에서는 ‘21년 11월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수립했으며 만 19세 ~ 39세 청년 부상제대군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비전을 수립한 바 있음.

비 전 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진출 지원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지원

| 추진과제 | 분야 | 주요과제 |
|------|----------|--|
| | 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군인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 보훈 관련 법률상담 지원 |
| | 심리재활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신건강 지원 ▶ 심리재활 촉진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
| | 자립·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을 위한 창업 및 일자리 지원 |
| | 예우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나라사랑 청년상」 신설 ▶ 전상·공상 유공자 기념공간 운영 |

[그림]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 계획 정책 비전

-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
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애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애로 전역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한 사람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 제정안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해 특정 거주기간 등을 지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두고 있어 적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 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6조~제8조)

-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에서는 ‘22년 3월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소하고 국가유공자 신청 관련 상담 및 법률지원, 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프로그램 연계 등 청년 부상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현황 및 실적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현황】

- 개소일자 : ‘22.3.25.(금)
- 위 치 :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청 지하 1층
- 운영인력 : 총 4명 (서울복지재단 법률지원 변호사 1명 포함)
 - 팀장 (1명), 직원 (3명*) * 변호사 1, 심리지원·취업상담 2
- 추진실적 및 집행액(‘22.8.31 기준)
 - 추진실적 : 상담센터 운영 : 95명 (253건 신청)
 - 상담 및 간담회 : 법률상담 29건/의료자문 6건/보훈상담 146건/국가유공자 신청 6건/개인심리상담 17명(64건)/취업정보제공 9회 81명/자조모임 6회기 28명/간담회 개최 2회 26명, 온·오프라인 홍보 106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인터뷰 등)
- 집 행 액 : 136백만원 (집행률 : 54.4%)

- 제정안 제8조에서는 해당 사무를 대행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음. ‘행정업무의 대행’이란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를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으로 하고 책임도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대행에 따른 법령상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대행기관이 원 권한자인 행정 기관 명의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함.⁶⁾
-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⁷⁾에도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하겠음.

3 종합의견

- 현행 「제대군인법」에 의해 지원되는 제대군인의 대상자는 대부분이 중·장기 복무자 중심으로 청년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었음.
 - 이와 관련해 제21대 국회에서도 의무·단기복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기본법

6) 법제처(2021). 법령입안심사기준.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음.⁸⁾

- 따라서 해당 제정안을 통해서 보훈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서울시에서 ‘부상 입고 제대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지원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⁹⁾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수렴, 실적을 포함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단, 본 조례안에 근거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¹⁰⁾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제도 협의대상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의안번호 2111650, 김병주 의원 등 13인 발의(2021.7.22.). 현재 21대 국회 계류 중.

9) 서울시 보도자료 (2022.03.25.). “서울시, 지자체 최초 ‘부상입고 제대한 청년; 종합지원..전용공간 개소’.
서울시 보도자료 (2022.06.21.). “오세훈 시장, 부상 제대군인·가족과 간담회...’윈스톱 상담센터’ 서울시청으로 확장이전”.

10)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
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제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
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38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공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기본법」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그 ‘희생·공헌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제도 또는 절차 안내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음
- 아울러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은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으로 ‘희생·공헌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청년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보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임
- 이러한 보훈정책의 미흡한 부분이나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청년 제대군인들의 공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며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 시장은 군복무 중 부상 당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등의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 지원 노력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 시장은 군복무 중 부상 당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다.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8조)

-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상담센터’의 운영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라. 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정보제공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수집·관리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22. 6. 2. ~ 6. 22.) 결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전상·공상 청년 유공자,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 등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장해”라 함은 「군인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3.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 [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 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사람을 말한다.
4. “전상 청년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공상 청년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질병을 포함한다)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함)에서 상(질병을 포함한다)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이라 함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질병을 포함한다)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함)에서 상(질병을 포함한다)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터"라 함은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장애를 입은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에게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훈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
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애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애로 전역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한 사람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훈관련 법률상담 및 행정절차 등 정보제공
2.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3. 취업상담 및 일자리 정보제공 등 지원
4.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상담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행·위탁) ① 시장은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① 시장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제공자에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6조~제7조 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발생이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 제출범위)

-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현재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추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보조사업 등으로 진행 중인 바, '22년 사업예산은 3억원임
- 아울러 동 사업의 '23년 추진에 있어 사업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실제적인 사업 규모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에 따라 추계가 어려움

4. 작 성 자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이향림(02-2133-7330)